

1979년 9월 12일 동경에서 각서교환  
1979년 9월 12일 발효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의 부표 및 동 부속서한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한국측 제안각서)

1979년 9월 12일

각하,

본인은, 1967년 5월 16일자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제 12조 및 제 14조에 따라 1979년 7월 30일부터 7월 31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협의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동 협의에서 이루어진 합의에 따라,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동 협정부표가 이 각서 유첨에서 정하여진 수정된 부표에 의하여 대치될 것이며, 또한 이 협정과 관련하여 1967년 5월 16일 양국 정부간에 교환된 서한의 제 1항이 다음과 같이 수정될 것임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대한민국의 지정항공사와 일본국의 지정항공사는 동일한 항공편으로 각자의 영역내의 어느 1지점 또는 제지점을 통과하는 항공업무를 운행할 수 있다. 단, 대한민국의 지정항공사의 경우, 대한민국내에서의 총 출입지점의 수는 서울과 부산을 포함하여 4개 지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본국의 지정 항공사의 경우, 일본국내에서의 총 출입지점의 수는 토오쿄오, 오사카 및 후쿠오카를 포함하여 6개지점을 초과할 수 없다.”

일본국 정부가 상기 제의에 동의한다면, 본인은 유첨이 첨부된 이 각서와 이에 동의한다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동 협정은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할 것임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유첨 : 수정된 부표

/서명/  
대한민국 대사 김정렬

부 표

1. 일본국의 1개 또는 2개 이상의 지정항공사가 양 방향으로 운행할 노선은 다음과 같

다.

- 가. 일본국내의 제지점-부산-서울과 그 이원의 제지점
- 나. 일본국내의 제지점-부산-제주

주: (1) 일본국의 1개 또는 2개 이상의 지정항공사는 노선 가. 에서 6개 이상의 상이한 이원지점을 운행할 수 없다.  
(2) 일본국의 1개 또는 2개 이상의 지정항공사는 부산과 서울 또는 부산과 제주의 어느 하나만을 운행할 수 있다.

2. 대한민국의 1개 또는 2개 이상의 지정항공사가 양 방향으로 운행할 노선은 다음과 같다.

- 가. 대한민국내의 제지점-토오쿄오-호노루루-로스안젤레스
- 나. 대한민국내의 제지점-오사까-타이페이-홍콩-사이공-방콕
- 다. 대한민국내의 제지점-후꾸오까
- 라. 서울-나고야
- 마. 대한민국내의 제지점-구마모도 또는 가고시마중 1개지점
- 바. 대한민국내의 제지점-니이가다 또는 고마쓰중 1개지점

주: 일본국의 1개 또는 2개 이상의 지정항공사가 대한민국 이원의 1개지점을 운행할 때까지 대한민국의 1개 또는 2개 이상의 지정항공사는 방콕을 운행할 수 없다.

3. 일방체약국의 1개 또는 2개 이상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제공되는 합의된 업무는, 동 체약국의 영역내의 1개지점에서 개시되어야 하나, 모든 노선상의 기타 지점은 지정항공사의 선택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의 비행시에 생략될 수 있다.

(일본측 회답각서)

1979년 9월 12일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의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한국측 제안각서).....”

본인은 각하에게 일본국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의 상기 제의를 수락함을 통보하며 또한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금일자로 발효하는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할 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서명/  
외무부장관 스나오.스노다